의안번.	<u>ই</u>	제187호					
의	결	년 월 일					
연 월	읟	(제 회)					

#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				
제출연월일	2023년 1월 6일				

####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

의 안 번호 187

제출연월일 : 2023년 1월 6일 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#### 1. 제안사유

- 의료비후불제의 사업대상자를 도내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보훈대상자는 연령제한을 완화하여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개선
- 신청자격 확대로 더 많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질병치료를 지원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사업내용 : 금융기관(농협)에서 의료비를 대납하고, 환자는 무이자 장기분할 방식으로 상환하여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최소화
- 채 권 자 : NH농협은행(NH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)
- 주채무자 : 의료비후불제 융자금을 받은 도민
  - (현행)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보훈대상자, 장애인
  - (변경) 65세 이상인 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보훈대상자, 장애인
- 융자금액 : 25억원(농협정책자금)
- 융자조건 : 1인 300만원 한도 / 3년 무이자 분할상환
- 보증기간 : 대출금 전액 상환시까지
- 보증범위 : 의료비후불제 대출 원리금

(미상환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道에서 보전)

- 3. 참고사항
-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사업대상 확대 계획(안) 붙임
- **4. 관계법령 발췌 :** 붙 임
- **5.** 기타 : 해당없음

# 붙임1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사업대상 확대 계획(안)

### □ 필 요 성

O 신청자격 확대로 더 많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질 병치료를 지원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

#### □ 사업개요

○ 사업위치 : 81개소(농협 충북영업본부, 종합병원 12, 치과병·의원 68)

○ 사업대상 확대(안): 112.358명 → 440.549명(증 328.191명)

#### 혀 핹

- ①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(31,915명)
- ②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(10,311명)
- ③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(19,937명)
- ④ **만 65세 이상 장애인**(50,195명)

#### 화 **대(안)** \* 중복제거

- ① 65세 이상 노인(314,485명)
- ② **기초생활수급자**(46,638명)
- ③ 차상위계층(25,913명)
- ④ 국가유공자(6,501명)
- ⑤ **장애인**(47,012명)
- O 대상수술 : 임플란트 식립, 슬관절·고관절 인공관절, 척추 및 심· 뇌혈관 수술(시술)
- **사 업 비** : 2,500백만원(농협 정책자금)
- **도비소요액** : 923백만원(농협 정책자금 이자 및 미상환금 보전)
  - 미상환금 등 보전 : 773백만원(미상환율 30% 적용)
  - 이 자 보 전 : 150백만원(연이율 6% 적용) ※ 1.6. 현재 5.72%
- O 대출한도 : 1인 50~300만원 / 3년간 무이자 상환
- O 사업량: 830명<sup>(최소)</sup>~5,000명<sup>(최대)</sup>
- 사업내용
  - 의료취약층의 의료비를 대납(농협)하고, 환자의 여건에 따라 무이자 장기 할부 방식으로 상환하여 의료비 부담 최소화
  - 도에서는 의료비 대출자금(농협)에 대한 미상환액 및 이자 보전

#### □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

$\bigcirc$	의료비후불제	및	착하은행	설립	과려	유과기	]과 ·	듲 겨	<b>가문 ·</b>	수시
$\overline{}$	· 1 — 1 1 — 1		1 1 - 0			11 11	نا ا	O '	1 🗠 •	

○ 충북연구원 정책연구과제 의뢰 : '22.06.

O 주요병원장 등 간담회(인수위) : '22.06.

O VIP주재 시·도지사 간담회 정부 협조 건의 : '22.07.

○ 의료비 후불제 TF팀 구성(팀장배치 9.3.) : '22.07.

O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및 회의(3회) : '22.08.

O 충북연구원 정책연구과제 완료 : '22.09.

○ 참여기관(의료기관, 농협 등) 간담회 : '22.10.

O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: '22.10.

○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(보건복지부) : '22.10.

O 전문가 자문위원 회의 : '22.10.

O 도의회 채무보증 동의안, 조례제정안 의결 : '22.12.

O 시범사업 운영지침 수립 : '22.12.

O 의료비후불제 참여기관 협약 : '22.12.

O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추진 : '23.01.

O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추진(보건복지부) : '23.01.

○ 의료비후불제 사업대상 확대 시행 : '23.02.

#### □ 他 제도와 차별성

○ 기존의 무상지원제도와는 달리 **정책수요자의 사회적 주체로서 책** 임과 역할(융자금 상환) 부여

#### ☐ 기대효과

- O 적기에 질병치료를 통한 **삶의 질 향상**(영양공급 및 사회적·정서적 안 정 등) **및 기대수명 연장** 제고
- O 지원받은 의료비를 상환하여 다른 어려운 도민에게도 도움을 주는 선순환(善循環)적 의료복지제도 정착

# 붙임2

#### 관계법령 발췌

#### □「지방자치법」

제139조(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.
-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.

#### □「지방재정법」

제13조(보증채무부담행위 등)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(이하 "주채무"라 한다)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#### □ 「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」

제3조(채무보증의 승인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"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충청북도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## □ 「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」

제6조(지원내용)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을 보증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(대출금과이자를 포함하여 "융자금"이라 한다. 이하 같다)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채무보증)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융자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「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」에 따라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.